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62호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5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5. 3. 28(금)~4. 28(월)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 모델명은 실용화 증명자료. 공인시험성적서 등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제출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신청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 ※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 연장의 대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연장 가능(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서류·면접심사 시 제출서류만으로 심사 가능 (단, 사전 면제 요청 필요)

5. 심사 수수료 납부

○ 심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제품 건당)	납부방법
서류·면접심사	20만원	신청접수시 온라인 카드 결제
현장심사	50만원	현장심사시 온라인 카드 결제, 개별통보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